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89
----------	-------

발의연월일 : 2025. 10. 24.

발 의 자 : 민홍철 · 박선원 · 서천호
강대식 · 윤후덕 · 황명선
안호영 · 인요한 · 이병진
차지호 · 한민수 · 박용갑
의원(12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2022년 방산 수출 173억 달러,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에도 95억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8위 방산 수출국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 이재명 정부는 이를 발판으로 “K-방산을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며, 우리 군을 “첨단 강군”으로 육성하겠다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무기체계 총수명주기(Life-Cycle) 비용의 약 70%가 운영·정비(O&S)에 소요된다는 미 회계감사원(GAO) 분석처럼, 우리 국방예산도 약 60조 원 중 70% 이상이 전력운영비로 편성되어 방위력 개선을 위한 신규 전력 투자가 쉽지 않음. 또한 무기체계 정비(MRO)가 해외에 치중되어 비용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실제 우리 군이 최근 5년간 지출한 군용기 해외 정비 비용만 2조 5

천억 원에 달하고, 8조 6천억 원 규모의 F-15K 업그레이드 사업 역시 장비·서비스 패키지 대부분을 미국업체가 수행하고 있음.

해상 분야는 국내 기업이 미 해군 함정 MRO를 잇따라 수주할 정도로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 해군 정비 물량은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민간 이전이 지체되고 있음.

육군의 경우에도 오랜 숙원사업이던 K2 전차의 파워팩 국산화가 최근 발표된 만큼, 향후 후속 군수지원과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안정적인 정비 및 부품수급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계속된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 우리 군은 현 50만 명 규모의 상비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는 전투 임무 집중을 위해 비전투병력을 단계적으로 축소·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특히 각 군은 무기체계 정비업무를 위해 수많은 현역 정비인력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군 인력 구조 개혁과 연계해 민간에 이양·위탁함으로써 부족한 전투병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육·해·공 모든 무기체계의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첫째, 국방예산 구조를 ‘고비용 구조’에서 ‘효율적 민·군 분담’으로 전환하고 둘째, ‘전투병력 위주의 인력구조 개편’으로 첨단 강군을 육성하며 셋째, 국내 MRO 산업에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해 K-방산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방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내 무기체계 정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위탁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 나. 민간 이양·위탁의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함에 있어 국내 민간 무기체계 정비산업의 기술·인력·시설 등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 다. 군 정비부대 인력의 민간 재취업·재교육, 민·군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군 정비물량”이라 함은 무기체계 및 관련 장비에 대하여 수행되는 유지관리, 수리, 분해점검, 개조 등 정비작업의 대상 또는 그 총량을 말한다.
8. “무기체계 정비산업”이라 함은 무기체계 및 관련 장비에 대하여 수행되는 유지관리, 수리, 분해점검, 개조 등 정비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부품·기술 공급, 인력 양성, 시설 운영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군 정비물량의 단계적 민간 이양·위탁 등) ① 국방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내 무기체계 정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위탁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국내 민간 무기체계 정비산업의 기술·인력·시설 등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군 정비부대 인력

의 민간 재취업·재교육, 민·군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군 정비물량의 민간 이양·위탁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과 정비사업자(무기체계 정비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u>“군 정비물량”이라 함은 무기체계 및 관련 장비에 대하여 수행되는 유지관리, 수리, 개조 등 정비작업의 대상 또는 그 총량을 말한다.</u>
<u><신 설></u>	8. <u>“무기체계 정비산업”이라 함은 무기체계 및 관련 장비에 대하여 수행되는 유지관리, 수리, 분해점검, 개조 등 정비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부품 · 기술 공급, 인력 양성, 시설 운영 및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u>
<u><신 설></u>	제24조의2(군 정비물량의 단계적 민간 이양 · 위탁 등) ① <u>국방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내 무기체계 정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 · 위탁한다.</u>

②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국내 민간 무기체계 정비산업의 기술·인력·시설 등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군 정비부대 인력의 민간 재취업·재교육, 민·군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군 정비물량의 민간 이양·위탁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과 정비사업자(무기체계 정비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